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25회 임시회

검토보고서

2018. 10. 25 (목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마포구청장
- 제안일 : 2018. 10. 15.
- 회부일 : 2018. 10. 19. (의안번호 :18 - 90)

2. 개정이유

기존 치수과의 ‘침수방지 시설 설치’ 사업 집행예산으로서 기금의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한 각종 분야의 기금 지원의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기금의 용도 항목 신설(안 제6조제12호 및 제13호)
 -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(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근거마련)
 -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한 기금사용 근거 마련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항목 추가(안 제11조제5호)
 -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(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)

4. 관계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제2항

5. 검토의견

- 기존 치수과의 ‘침수방지 시설 설치’ 사업 집행예산으로서 기금의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한 각종 분야의 기금 지원의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- 주요내용으로는

안 제6조제12호 및 제13호에서 기금의 용도 항목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신설하여 자연재해 및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.

안 제11조제5호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항목에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추가하여 기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환류장치를 마련하였음.

- 검토의견으로는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제2항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공분야 재난예방사업,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, 각종 보수와 보강 등 재난관리 수요에 사용하고 있음.

- 기존 치수과의 ‘침수방지 시설 설치’ 사업 내용은 서울시가 2003년부터 침수취약 지하주택 물막이판, 역류방지시설, 수중펌프 등 침수방지사설을 지원하는 시·구비 매칭사업임.
- 마포구는 과거 침수피해에 대한 아픔기억이 있었으나 그 이후 꾸준히 대비하여 지난해 정부평가에서 지역안전도 6년 연속 1등급을 포함하여 2018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아 왔음.
- 재난은 눈에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설 설치와 같이 사전에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재난상황에 긴급 대응하여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항목을 추가하여 확대 운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